

「사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」 심사보고

제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(2005.2.2)

1. 심사경과

- 가. 2005. 1. 5 :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5. 1. 25 : 산업건설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2005-3호)
- 다. 2005. 2. 2 : 제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 설명요지(건설과장 강상민)

가. 제안이유

- 방조제관리법 개정으로 관리방조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위임 규정이 삭제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관리방조제심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삭제

다. 근거법령

- 방조제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영태)

- 동 조례안은 방조제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
 - 시행령 제10조(자치단체관리방조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)에서 규정한 관리방조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위임규정이 2000년 5월 25일 자로 삭제되어
 - 상위법령에 맞게 관리방조제심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(조례 제3조

및 제4조)을 삭제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

-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절차 및 체계, 상위법령과의 관계, 용어 및 조문의 정리, 시행 상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전원찬성)

7. 소수의견 : 없음